

본 안내문을 **지참**하시고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 제시 바랍니다.

최종 갱신일 : `24. 09. 01

연구비 계좌 신규 절차

필요서류 준비
(추가 필요서류 여부 영업점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서류 & 본 안내장 지참)

영업점 업무처리 진행
(하단 영업점 직원용 참조)

가입대상 / 유의사항

- ※ **가입대상** : 통합Ezbaro시스템 연구과제 참여기관,기업 및 개인사업자
- ※ **첨부된 필요서류 및 사업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방문 시, **본 안내문과 함께 영업점에 제출** 바랍니다.
 - ☞ 선정확인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선정안내 공문(이메일 및 통합Ezbaro시스템 내 과제정보 화면 캡처 등도 가능)을 준비
- ※ 신한은행 연구비 전용계좌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 ※ **연구비전용카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불가)**
[www.gaia.go.kr]에서 “통합연구지원” ▶통합Ezbaro 참여카드사 ▶연구비카드 전용콜센터(1566-0369)

영업점 직원 업무처리용

본 안내문을 지참한 연구수행기업의 정부 연구비 수령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한 필수 징구 서류는 해당 기관 / 재단의 “협약서 및 연구과제 선정 공문”으로 갈음 가능함

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징구** (본 안내장 만으로 목적증빙 대체 불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협약서 및 선정 안내 공문 등

※ 연구/사업비 목적증빙서류未지참 시 ‘법인(사업자)계좌 목적증빙’ & ‘실체 확인’ 대체 可

※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제도, 고객확인 제도 등에 의한 수신 업무기준 및 징구 서류는 동일

② **신한은행 연구비 전용 계좌 신규**

☞ 순수 개인의 경우 전용 상품 신규 불가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정상계좌) 신규

③ **기업 인터넷뱅킹 신규** (고객 필요 시 가입)

-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통합Ezbaro 전용 콜센터
☎ 1833-2785

연구비카드 전용 콜센터
☎ 1566-0369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1)

아래 기본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하실 영업점에 유선으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구분		법인	임의단체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1,86,87,88,84,85 •82(법인인감 신고업체의 경우)	•80,89 •82(법인인감 未신고업체의 경우)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주주명부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주주명부
인터넷 뱅킹 + SMS 통지 서비스	본인 신청시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의 서류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3	•01 - 79 •90 - 99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과 통장사용도장 •위임관계 서류 다음 중 하나 ①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② 계좌개설요청공문 + 관인대장 ③ 대표자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 SMS 통지 서비스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본인 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뱅킹 서비스 신청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뱅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대리인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기업 인터넷뱅킹 신규요청 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뱅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대리인은 신청불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II)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행중인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제출서류(예시)

단체 구분	징구 서류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설립 목적 확인 서류
	대표자 내점	대리인 내점		
주식회사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유한회사			• 출자자 명부, 정관 등	
합자회사			• 사원 명부, 정관 등	
합명회사				
사단법인			• 출연자 명부, 사원 명부, 정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재단법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 시)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 시)	• 정관, 규약 등 •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확인서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서면 (공문, 실제소유자 확인서 등)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회칙, (관리)규약, 소속 증명서(종교단체), 인허가증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설립목적 정보 출력 및 첨부 가능
개인의 대리인	• 금융실명제와 동일(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과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서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